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의안 번호	2342
----------	------

2025년 3월 5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년 1월 30일, 이새날 의원
- 회부일자 : 2025년 2월 6일
- 상정일자 :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
(2025년 3월 5일 상정, 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새날 의원)

1. 제안이유

-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보훈문화 조성의 핵심은 자라나는 미래세대 중심의 보훈교육 활성화에 있음.
- 보훈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국가와 국민의 영웅들을 존경하고, 그 헌신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.

- 이에 학생들이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보훈교육 실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제5조(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)에 보훈교육의 근거를 추가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박광선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30일 이새날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342호로 발의되어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이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보훈교육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보훈교육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1조¹⁾에 따라 미래 세대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고인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애국하는 마음을 계승하여 국민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평화와 통일 교육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하는 교육입니다²⁾.

1)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보훈(國家報勳)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(宣揚)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) 보훈교육연구원 「보훈과 교육」 참조

-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8조제1항³⁾에 따라 국가보훈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, 동 계획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 보훈교육 진흥 및 보훈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- 이와 같은 보훈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살펴보면, 보훈교육은 미래 세대들이 호국 보훈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추며 자유로운 민주시민의식을 길러 21세기 미래세대에 맞는 안보관 및 평화·통일 의식을 겸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 즉, 보훈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보훈의식을 기반으로 올바른 평화·통일 의식을 겸비하는 것으로써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평화·통일교육과 연관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.

[표-1] 보훈교육의 목표 및 내용

구 분	내용
보훈교육 목표	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함 ② 유족 또는 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 ③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함 ④ 국민의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함 ⑤ 평화 통일교육을 주도하는 인간을 양성함
보훈교육 내용	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짐 ② 호국 보훈의식을 함양함 ③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춤 ④ 자유로운 민주시민의식을 기름 ⑤ 21세기 미래세대에 맞는 건강한 안보관과 평화 통일 의식을 겸비함

출처: 보훈교육연구원. 「보훈과 교육」

- 한편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‘학교민주시민교육’ 활성화 기본계획을 살

3)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8조(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11조에 따른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② ~ ⑤ 생략

펴보면,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통일교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러한 통일교육의 목표 및 방향을 살펴보면 ‘건전한 안보관·객관적 북한관 정립’, ‘북한에 대한 이해’ 등이 포함되어 있고, 호국보훈의 달(6월) 등에 학교 통일·안보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- 그러나 실제 통일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‘통일의 이해’, ‘북한의 이해’, ‘통일환경과 통일정책’, ‘통일비전과 과제’ 등 ‘북한의 이해’를 제외하고는 보훈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.

[표-2] 서울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(학교통일교육) 활성화 기본 계획

구 분	내용
통일교육 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평화적 통일의 실현의지와 태도 확립 ②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민주시민의식 고취 ③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④ 건전한 안보관·객관적 북한관 정립
통일교육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통일의 이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통일문제의 성격 2) 한반도 분단의 배경 3) 통일의 필요성 4) 통일 비용과 편익 ② 북한의 이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북한의 정치 2) 북한의 군사 3) 북한의 경제 4) 북한의 사회·문화 5) 북한 주민의 인권 ③ 통일환경과 통일정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국제 정세와 동북아 정세 2) 남북관계 3) 윤석열 정부의 통일·대북 정책 ④ 통일 비전과 과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통일 미래 비전 2) 통일을 위한 과제

출처: 서울특별시교육청, 「2024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」

-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보훈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시행 중인 학교민주시민교육 중 통일교육에서 부족한 안보관 등의 보안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V. 토론요지 : 없음.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.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국가를 위한 희생·공헌 등 보훈의 가치 및 독립·호국·민주의 역사에
관한 교육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)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5조(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) -- ----- 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〈신설〉	8. 국가를 위한 희생·공헌 등 보훈의 가치 및 독립·호국·민주의 역사에 관한 교육